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른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이 덕 훈*

.....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부부문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발생주의회계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논리와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변경내용, 여타 국가의 재정회계제도 변경과 운영에 대한 고찰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실제 발생주의회계방식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사용되고있는 현금주의, 수정현금주의, 수정발생주의, 완전발생주의 등의 개념적 이해와 함께 각 방법에서 사용되는 측정과 인식의 초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회계 도입과 실행과정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추가되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개발과 연관부서와의 일관성 강조,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및 보고양식의 개발, 회계업무 담당공무원과 예산 및 집행담당 공무원의 재교육, 재정상태와 성과의 실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의 정비, 개발 등의 논의 등으로 구성된다.

.....

I. 서 론

예산운영이 정책관리의 도구가 되게 하려면 그 운영이 신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에 투명한 재정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회계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정부부문의 부정과 부패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선진국의 재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인데 우리나라의 경

*부천대학 비서행정과 전임강사

우에도 정부 각 부처의 재정과 회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0대부터 몇몇 회계학자들이 정부회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중앙정부나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정부회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실천에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처럼 절박하지 않아 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지도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아주 제한된 회계단위에 대하여 결산감사를 하여온 공인회계사들이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기업형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주고 가는 사례만을 보아온 공무원들로서는 복식부기란 ‘어렵고 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정부부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라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가 필요 없으며, 공무원들은 회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재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자원과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 복식부기 도입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대 논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그 동안 선진국에서 성공한 제도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원활하게 접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복식부기의 도입도 또 하나의 실패사례가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복식부기 시범사업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의 제고와 투입성의 확립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본격적인 재정회계제도의 변경에 앞서 그 내용과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여타국가의 도입현황을 소개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다.

-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논리와 의의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변경내용
- 여타 국가의 재정회계제도 변경과 운영에 대한 고찰

다음으로는 정부회계에 있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현재의 재정회계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한 여타국가의 사

례 검토와 제안이 이어진다.

상기의 문제들은 민간부문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정부회계의 특성상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정부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토라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타국가들의 선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II. 발생주의정부회계의 도입

1. 개혁의 논리

1997년 환란의 위기는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와 기업이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은 데서 기인한 면이 있다. 예로 주식회사 한보가 7년 간 4조 5천억원을 분식(粉飾)하여 적자회사를 흑자회사로 만들었고,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1998년에도 75개의 상장회사 중 36개 회사가 분식회계 처리를 할 정도로 기업 회계제도의 문제가 많았는데 정부회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30년대 대공황 시 기업 및 지방정부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기업회계기준 제정위원회인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는 연방정부 독립규제위원회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위임에 의해 기업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적 목적 및 외부 재무보고를 위한 통일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회계기준의 일반적 적용을 위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부회계의 개선을 위해 「시정부회계에 관한 전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Municipal Accounting: NCMA)가 창설되어 정부회계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는 1948년 정부회계위원회(NCGA), 1973년 정부회계전국협회(NCGA), 1984년 정부회계표준위원회(GASB)로 확대 발전하였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과 일본 등 몇몇 대륙법 계통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초 발생주의회계방식을 채택했으나 1976년에 포기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는 대부분 수정발생주

의기준을 택하고 있으나 발생주의회계방식을 채택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경우에도 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가 중심이 되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회계의 가장 성공적인 개혁사례는 뉴질랜드인데 전 세계에서 기업형회계제도(발생주의)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이다. 호주에서도 부분적으로 발생주의 채택,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국에서도 기업형회계제도로 자원예산회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정부회계개혁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성과주의, 인센티브제, 목표관리제 등 기업형 행정을 위한 개혁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던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costs less)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결과지향(results oriented)의 행정으로 표현된다.

둘째는 규제 완화와 사정을 통해 부정부패의 고리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다.

문제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상호보완적이기보다는 대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부정을 줄이기 위해 사정(司正)이나 감사활동을 강화하면 각 부서 및 일선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재정운용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복지부동하는 행태가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은 간과되고 오히려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단기적인 기준에만 집착하게 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자율성을 확대할수록 책임성은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가 필요하다. 예산운영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을 때만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모를 때에도 비현실적으로 운영된다. 신뢰할 만한 관리정보 및 회계체계가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과거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

- 정부에서 추구하는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등의 행정개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신속성, 투명성, 회계책임이 확립되어야만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empowering)할 수 있어 이들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구상,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costs less)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지향(results oriented)의 행정이 가능하다.
- 권한부여(분권화), 비용과 편익 효과의 분석, 성과지향 등은 신속 정확한 관련 재정정보가 획득되는 경우에 달성 가능하다.
- 예산운영상의 재정적 거래, 즉 세입 세출의 각 단계별 결정을 기록, 분류, 정리,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즉 관리정보 및 회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예산회계정보시스템(Budget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BAIS)은 예산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조직단위별 성과측정, 세입·세출에 대한 정보, 정부정책의 기획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정부부채와 투자에 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회계체제라 할 수 있다. 정부회계는 재정운영이 통제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단기적 안목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입예산에서 성과중심으로, 정보독점에서 정보공유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제(mechanism)로 작용한다.

2.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변경 내용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회계제도의 변경에 대해 그 목적과 내용을 개관한다.

1) 정부회계제도 변경의 목적

회계제도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가 충분하고, 재정정보의 정확성, 이용가능성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이 증대한다. 이에 준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재정정보의 질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 (1) 재정진단 및 경영평가를 위한 객관적 정보 제공
 - 경영진단
 - 재정위기 예보 및 진단
 - 공공요금 가격, 원가의 합리적 책정
- (2) 회계투명성의 확보
 - 내부통제의 강화: 공무원의 비리 방지
 - 주민의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 (3) 정보의 공유를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제공
 - 재정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제공
- (4) 신용평가에서의 유리
 - 신용등급의 상향평가에서 나오는 편익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형 회계 도입 비용을 상회¹⁾

2) 정부회계제도 변경의 내용

여기서는 앞에서 서술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재정회계제도의 변화 방향과 이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열거한다.

〈표 1〉 Standard & Poor's(1995)의 공공부문 신용등급 평가지표

항 목	평가기준
· 경제적 기초	지역의 고용율, 조세, 인구지표(연령, 교육, 소득수준, 기술력 등)
· 재정성과 및 신축성	회계 및 보고방법, 수입/지출구조 및 유형, 운영성과, 펀드지분, 예산/재정기획력, 채무부담능력)
· 채무부담	현재와 향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항목
· 행정	재정적인 자율성과 재량성, 고위직의 경력, 선거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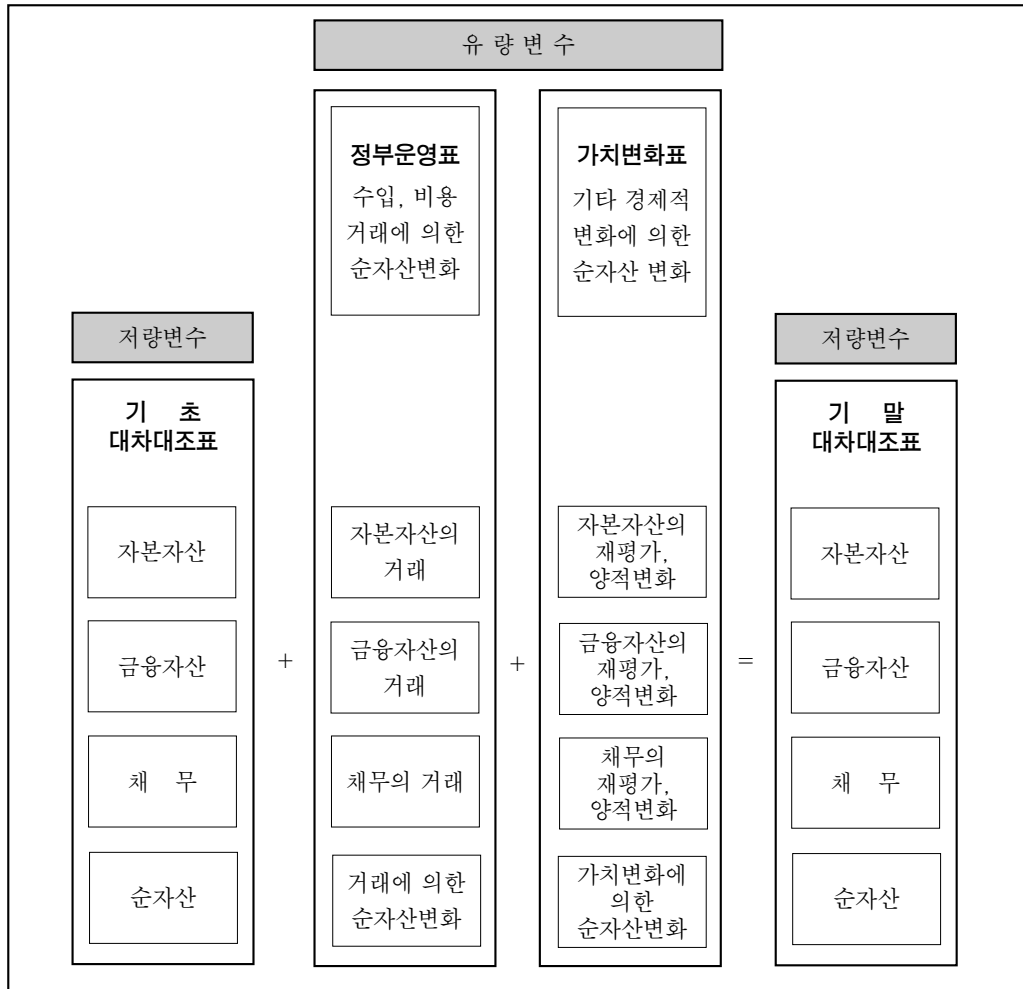
1) 예를 든다면 해외차입시 한 등급의 신용등급평가차이에 따라 차입이자율이 변한다거나, 해외 기업의 대 한국 투자시 고려되는 Country risk의 변동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되는 것 등이 있다.

정부회계는 예산과 회계시스템의 연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펀드(fund) 체계와 현금회계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부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원가를 완전히 계산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자산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 중심이며, 기업특별회계(5회계단위)·기금(55회계단위)은 복식부기·발생주의를 적용하나, 공공부분 특성에 맞는 회계기준이 없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정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임의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특별회계는 평상시에는 현금출납만을 기록하다가 연도 말 결산 시에만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의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일부 회계와 국방부는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결산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각 부처와 기금별로 통일되지 않은 양식의 결산보고에서 전체적인 정부차원의 재정현황 파악이나 성과 측정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현행 정부결산서(9종: 회계별·자산별로 분리)는 그 산출량과 복잡성에 대비하여 재정부영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과 목별 집행실적 집계수준만을 표시하여 정보의 내용이 빈약하고 한 부처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관리할 경우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달라 기관별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사업별 자산관리와 사업별 원가정보의 파악이 곤란하고, 제한된 회계방식으로는 IMF 등이 제시하는 각종 재정지표와 분석자료 산출이 어려워 정보이용에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기관별 책임성을 중시하는 IMF의 통합재정신기준(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적용이 곤란하다. 이 내용은 [그림 1]과 [그림 2]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변화의 방향으로서 개념적 차원에서의 재정회계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조치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초로 하는 정부회계의 프레임워크 변화와 통합시스템을 이용한 국고금관리의 효율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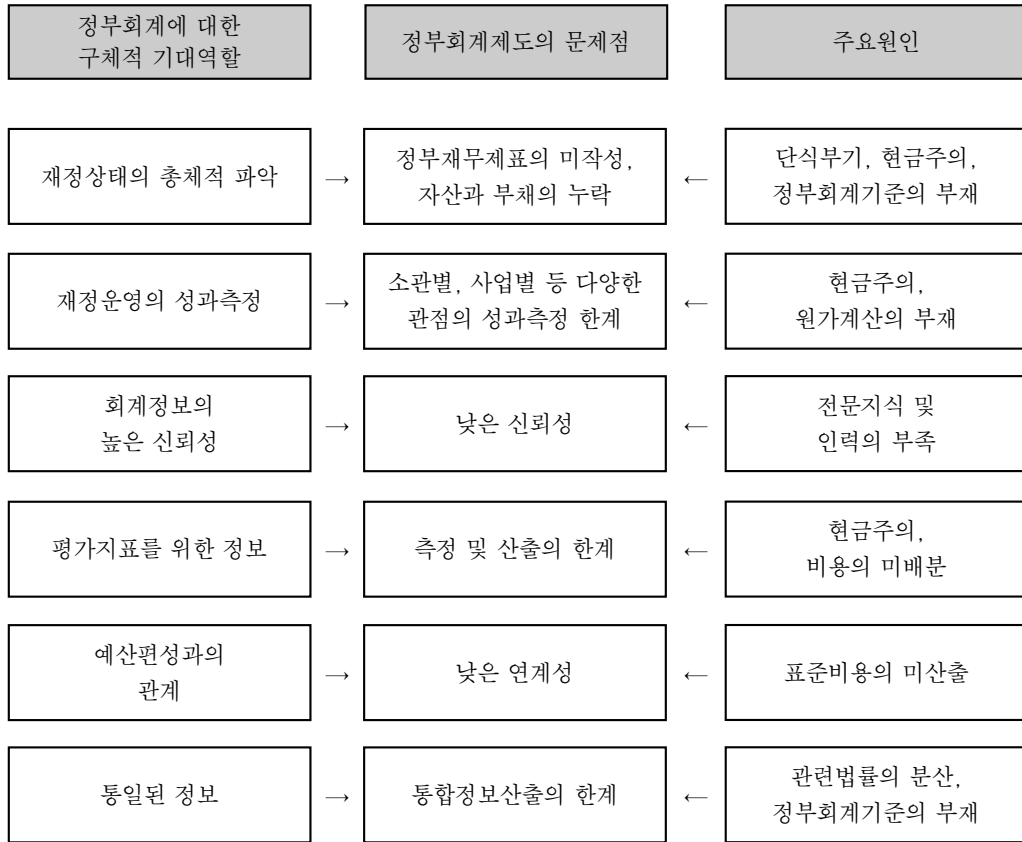
정부는 1998. 5월(재정경제부) 및 1999. 3월(기획예산처)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방침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된 예산회계에관한기본법제정안(한나라당안), 예산회계법개정안(민주당안)의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합의하였다.²⁾ 또한 회계기준과 회계정보산출을 위한 시스템구축, 회계관련직 공무원의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IMF에서 제시하는 GFS의 개념체계

또한 전자정부구현과제의 일환으로 국고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수입금의 징수관리와 지출관리제도의 개선, 자금관리절차의 개선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웹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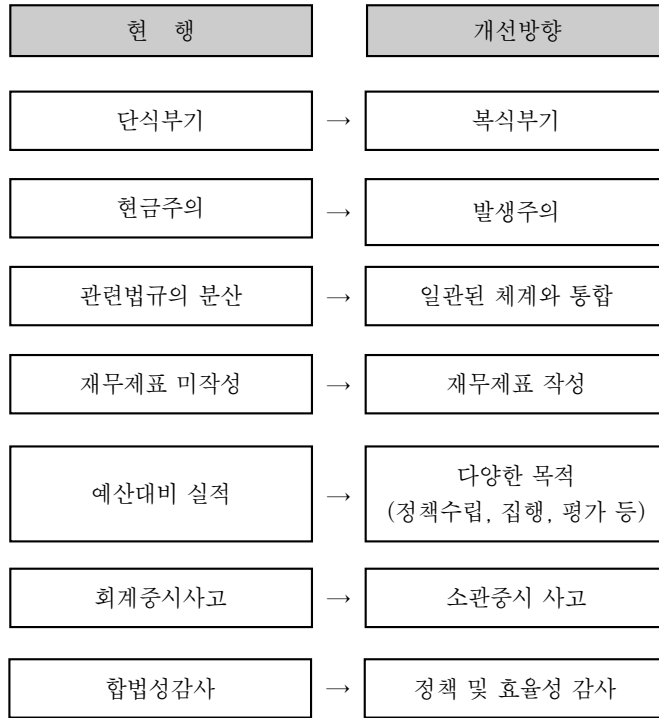
- 2) 제 12 조(정부회계제도의 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 등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계리하기 위한 회계기준(이하 "정부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회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표 2〉 회계과정의 프레임워크 변화

	현 행	변화방향
예결산, 회계처리방식 변화 (개념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대비 집행의 실적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식부기 -현금주의 • 9종의 결산서 (세입세출 · 기업특별회계 · 기금 · 계속 비 · 예비비 · 국유재산 · 물품 · 채권 ·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식부기 -현금주의 • 통합재정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총평 -재정상태보고서(대차대조표개념) -재정운영보고서(손익계산서개념) -주석 · 예산집행실적 등 부속자료



(그림 3) 개념적인 재정회계제도의 개선방향

<표 3> 국고금관리의 개선 방향

	현 행	변화방향
국고금 관리제도의 개선 (운용의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회계법령의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회계법령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업무처리 -별도의 업무로 이루어지는 수입, 지출, 국고금관리 -연월단위의 재정운영 현황 파악, 재정 상태 진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통합된 국고금 관리 -국고여유자금 관리의 효율화 -실시간 단위 재정운영지표 산출

의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III. 여타 국가의 재정회계제도 변경과 운영에 대한 개관

여기서는 국가별로 재정 및 예산회계과정의 변화를 조망하고 중점적인 변화의 방향을 살펴본다. 재정개혁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뉴질랜드를 들 수 있는데 완전발생주의회계 및 실제 징수되는 자본비용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의 효율화를 가져 온 사례로 소개된다. 먼저 주요 국가별 발생주의회계 도입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4〉 국가별 발생주의 회계 도입현황

국가명	결산회계	예산회계
뉴질랜드	발생주의('92)	발생주의
호주	발생주의('96)	발생주의
미국	발생주의('98)	수정현금주의
영국	발생주의('99)	발생주의
캐나다	발생주의('01)	발생주의

※ 기타 발생주의 도입국가: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발생주의 도입추진국가: 프랑스

발생주의 미도입 국가: 독일, 일본 등

1. 뉴질랜드의 예산개혁

뉴질랜드는 우선 예산편성에 완전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수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또한 예상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자산, 부채에 대한 통제목표를 공시함으로써 예산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원가의 통제목표도 회계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자원회계' 방식이라 불리며 각 부처는 이것에 기초하여 소유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자본비용이란 각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유지보수비나 감가상각비도 이러한 자산보유원가에 속한다. 이와 같은 자본비용은 각 부처의 순자산(총자산-부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본비용의 요율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금리 등을 기준으로 참조하고 각 부처에 정부투자

조달비용(각 부처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재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산된다.³⁾

실제로 각 부처는 자본비용을 정부에 지불하고 정부는 그 자금을 국고에 유치한다. 그리고 지불된 자본비용은 재무성과보고서와 현금흐름표에 실제의 지출로 계상된다. 쓸데없는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면 불필요한 자본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순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관리에 관한 예산통제는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로 보여진다.

또한, 뉴질랜드의 고정자산에는 사회간접자본 등도 포함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각 이후의 재조달가액에 기초한 시장가격의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해당자산의 취득시기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자본비용의 차이를 균일화하고, 자본을 보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각 부처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민간부문과도 비교할 수가 있다. 또한 자산관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얻게 되었다. 말하자면 가장 적절한 효율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자본비용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쟁시장이 출현하고, 이를 통해 자원관리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 영국과 스웨덴의 예산개혁

이 두 나라의 에이전시에서는 완전발생주의회계가 실시되고 있어, 예산시스템에서도 자금만이 아니라 원가에 기초한 예산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자원회계방식을 채용하고 고정자산에 6%의 효율을 곱한 것을 명목상의 원가(부가원가)로 하여 자본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정자산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국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도 2000년도부터 완전발생주의를 도입한 자원예산제도를 회계만이 아니라 예산편성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중앙정부의 자원회계는 유동자산으로부터 유동부채를 공제한 순운전자본에 일정한 효율을 곱하기 때문에 효율성 판정의 관리대상을 순운전자본에만 국한하고 있다.⁴⁾

3) 예: 1996년도 연차보고서에서의 자본비용의 효율, 재무부 11.5%, 농림부 10.5% 등

어쨌든 필요하지 않은 재고자산이나 불량채권 등을 다량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자본비용부담이 늘어나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결과가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계산이다.

3. 미국의 예산개혁

1) GASB 1700 규정

미국의 경우, GASB는 '섹션 1700'으로 회계기준을 고시하고 예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의 회계기준은 모두 수정발생주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두 시스템의 회계규정이 서로 다를 때에는 우선 예산에 대한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예산기준에 준거한 계정설정과 예산보고를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거한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될만한 보충정보를 준비하도록 규정하여 양자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기중에는 예산계정을 재무시스템 내에 설정하여 예산통제의 절차에 따라 수지를 재무적으로 통제하고, 기말에는 그 반대로 분개함으로써 재정상태와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지출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지출부담행위(물품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미실현계약)는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산통제를 목적으로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 지출부담행위회계는 효과적인 예산통제와 회계책임을 보증하고 현금수지의 효과적인 계획과 통제에 필요한 만큼 이용해야 한다.
- 연도 말의 미실행 지출부담행위는 체결한 미실행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종지출추정금액을 나타낸다.
- 완료예정계약이 완성 또는 사실상의 완성단계에 있을 때에는 지출부담행위 대신에 지출과 부채가 인식되어야 한다.
- 지출부담행위가 있는데도 연도 말에 지출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보고주체가 연도 말에 그 계약을 속행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4) 이는 고정자산의 파악에 부가되는 검토과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다.

- 정부보고주체가 계약의 속행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연도 말의 미실행 지출부담 행위는 재무제표에 주기로 공시해야 하고 차년도 이후의 세출에서 그 거래의 완성을 보증해야 한다.
- 지출부담행위의 회계처리와 보고방법은 이를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에 공시해야 한다.

2) FASB 기준서 제 7 호: 예산과 재무회계와의 조정개념

현금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예산회계정보, 특히 원가정보에 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정보를 재무회계정보로 보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런 조정계산을 통해서 지불의무에 기초한 예산회계와 발생주의에 기초한 기업재무회계의 관계가 성립한다.

두 회계의 관계는 예산자원이 어떻게 행정활동원가에 자금을 공급하며, 나아가서는 보고주체의 자산과 부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다. FASB는 이것을 '자금공급보고서' 라고 지칭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자금계산서와 손익계산서의 조정계산이 자금운용표 또는 자금이동표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4. 발생주의 재정회계제도 운영의 초점

발생주의 회계는 현재의 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금주의 회계는 간편하며, 현재의 차입요구와 화폐공급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잘 측정할 수 있다. 문제는 현금주의 회계 체제에서는 미래에 대해 무감각한(future-blind) 단기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⁵⁾

따라서 정부가 미래의 엄청난 부채(지불할 능력범위 밖에 있는)를 걸머지게 되어도 계정은 완전히 균형된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왜 이러한 단견적인 방

5) 미국 연방의회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① 의원들이 현금기준인 예산제도에 익숙하고, ② 사업이 아닌 의회수준에서는 두 기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③ 이해하기 어려운 발생주의 기준이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이다.

식으로 회계를 하게 되었는가? 이는 정부회계분야가 20세기 초 정부부패에 대한 집중하는 우려를 감안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정부회계는 통제(control)제도를 만들어 도둑맞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부정행위는 미래의 부채가 아닌 주로 현재의 거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에만 초점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재정 및 지출결정이 함축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퇴직프로그램, 연금 및 채무보증사업 등은 그렇지 못하며, 연금계약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정부에서 미래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갖추어야 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또한 세금공제(tax credit)와 세금감면(tax deduction), 혹은 대부보조금(loop subsidies) 등은 지출항목으로 계산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금을 수반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로, 상수도, 건물, 기계와 같은 물리적인 자산의 처리방법이다. 물리적 자산은 투자이다. 정부에서 고속도로나 댐을 건설하면 저축계정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댐이 노후화하고 훼손됨에 따라 그 가치는 저하되어 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현행 정부회계제도는 현금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산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정부회계기록은 자산의 소유와 보수 상태 및 가치를 거의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자산을 사용하는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⁶⁾ 이런 방식으로 정부회계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존구조물을 유지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선거에서 유리한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몰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현 회계제도는 또한 정치인들이 예산 위기 시에 어떤 비용도 추가되지 않게 하듯이 유지비용을 삭감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엄청난 미래의 지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주의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의 형태로 현재의 지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진국가에서 정부회계의 개혁이라 하면 주로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6) 그러나 사실은 반대이다. 유지비용을 경상비로 책정함으로써 자산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자산을 다 써버리는 것이 더 싸게 보이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바꾸는 것을 정부회계의 개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면 현재 정부부문에서 고민하고 있는 회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인가.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 즉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복식부기가 곧 회계나 회계정보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정부부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재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로는 원하는 회계정보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회계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바꿈으로써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자는 것은 아니다.

1) 측정의 초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고주체의 재무자원과 경제자원의 개념이 도입된다. 재무자원이란 경영자원 가운데 지불수단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이나 그와 동등한 자산이 전형적인 것으로 여기에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단기채권 등의 유동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회수가 확실시되는 장기성투자와 대부금도 통상적으로 재무자원에 포함된다. 판매용재고자산도 매각처분을 통한 준비된 현금이라는 점에서 재무자원에 포함된다. 재무자원에는 이 같은 양(+)의 자금항목 이외에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의 음(-)의 자금항목도 포함된다. 이러한 음의 자금항목은 변제됨으로써 양의 자금항목인 현금 등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다.

재무자원의 증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지출주의 회계방식' 또는 '수정발생주의 회계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무자원이 지출에 대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측정의 초점이 되는 것은 재무자원이다.

재무자원의 증감내용을 수지계산한 것이 재무자원을 자금항목으로 하는 자금수지계산서이며 회계연도 말의 잔고는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계상된다.

재무자원 이외의 고정자산, 선급비용, 선수수익, 준비금 등의 비재무자원 또는 비자금(非資金)항목을 증감계산하여 그 결과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회계방식을 완전발생주의라고 한다. 이 경우 자금항목과 비자금항목의 증감을 합산한 계산은 해당 보고주체의 순자산이나 지분의 증감계산에 대응한다. 이에 관한 계산서로는 손익계

〈표 5〉 재무자원과 경제자원

	차 변	대 변
대차대조표 항목	[화폐성자산] 현금예금, 화폐성적립금, 유가증권, 대부금, 투자	[화폐성부채] 차입금
	[수취계정, 재고자산]	[화폐성부채이외의 모든부채] 지불계정, 선수금, 준비금
	[고정자산, 이연자산]	} [손익이나 순재산증감액]
손익계산서 항목	[비용]	
		[수익]

산서 또는 순자산증감계산서가 된다.

경제자원이란 재무자원과 비재무자원을 합친 것을 말하며 해당보고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포함한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현금이 수수되었을 때만 거래나 사상을 인식한다. 이 경우의 행정활동보고서는 현금수수보고서가 된다.

수정현금주의 하에서는 회계기간 말일, 일정기간(출납정리기간)의 현금수수를 기말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수지에 반영한다. 이 회계처리방법은 극히 단기간의 입출금에 관한 채권, 채무를 회계연도 말에 계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경우 행정활동보고서는 출납정리기간의 현금수수가 포함된 현금수수보고서가 된다.

수정발생주의에서 거래나 사상을 인식할 때 고려하는 것은 현금의 수수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재무자원에 영향을 미친 회계기간이다. 이 경우 행정활동보고서는 해당 재무자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된다.

완전발생주의에서 거래나 사상을 인식할 때 고려하는 것은 현금의 수수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경제자원에 영향을 준 회계기간이다. 이 경우의 행정활동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다.

IFAC-PSC, 1993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각국 정부가 채택한 회계의 기초와 측정의 초점은 순수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걸쳐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어떤 국가의 경우에도 하나의 이론적 유형에 완전히 합치하는 회계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⁷⁾

〈표 6〉 거래나 사상의 인식

인식기준	인식과 측정의 시기	측정의 대상(계상항목)
현금주의	입출금할 때	현금예금
수정현금주의	상동 (기말에만 출납정리기간 내의 입출금포함)	당좌재무자원 (기말에만 출납정리기간 내의 입출금포함)
수정발생주의	재무자원(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이 증감할 때	재무자원(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 고정자산 불포함
완전발생주의	거래나 사상이 발생할 때	모든 경제자원

〈표 7〉 회계의 기초와 측정에 따른 국가의 분류

국가명	독일, 일본 영국정부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에이전시 뉴질랜드			
	↓		↓	↓		↓			
회계의 기초	순수 현금주의 회계	수정현금주의 회계	축소수정 발생주의 회계	순수수정 발생주의 회계	확장수정발생 주의회계	완전발생주의 회계			
측정의 초점	화폐성자산, 부채	(수정) 화폐성 자산, 부채	(수정) 화폐성자산, 수취 계정, 재고자산과 모든 부채		화폐성자산, 수취 계정, 재고자산과 모든 부채	(수정) 순자산 (지분)	모든 경제자원 순자산 (지분)		
국가명	↑ 일본	↑ 영국정부	↑ 독일	↑ 캐나다	↑ 유럽연합	↑ 프랑스	↑ 미국	↑ 네덜란드	↑ 영국 에이전시 뉴질랜드

예를 들어 수정현금주의를 표방하면서 측정의 초점으로 화폐성자산 및 수취계정, 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덴마크 같은 경우 재정보고에 포함되는 항목과 측정의 대상이 많은 차이를 가진 상황이며 이는 재정보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계시스템

7) 이는 각 국가의 특수한 환경이 제도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회계방식 도입은 완전발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청회 등에서 국민연금, 문화유산, 방위자산 등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음은 표방하는 완전발생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하에서 산출되는 재무제표 이외에 추가적인 회계절차가 많이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VI. 결 론

1. 연구의 요약

정부회계개혁 5개년계획의 요지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합재정보고서를 통하여 국가경영성과의 효율적 도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조류에 합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1998년 5월(기획예산처는 1999년 3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의 도입방침을 천명한 이래 1999년 7월 회계개혁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2002년 2월 재정경제부 산하에 정부회계기준위원회(9인)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6월 안건회계법인으로부터 1년에 걸친 정부회계기준 초안작성 용역보고서를 전달받았다. 2002년 5월의 제2차 공청회에 의하면 동 위원회가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회계업무 용이화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경영정보 산출을 위해 전산에 의한 자동분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찍이 1992년 뉴질랜드 정부를 필두로 OECD 29개 국가 중 반정도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상태이고, IMF가 정부간 비교를 위해 1986년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매뉴얼을 공표한 이래 2001년 12월 개정판에서 발생주의로 작성할 것과 지방정부도 통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에 이미 수년간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2005년에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도입이 실행 그 자체로 모든 당면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처사가 아님은 자명하다. 먼저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명료한 단식부기체를 일순간에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방법의 변화가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금의 집행으로써 실적을 평가하는 현 체제와, 자금을 포함한 모든 경제자원의 조달과 사용, 그리고 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탁상

용계산기와 워크스테이션 정도의 차이로 비견할 수 있다.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교육만으로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인적구성 요소를 완성했다고 함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가 재정활동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과소 평가한 전형적인 착오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완전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지 못했고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절반에 가까운 OECD 회원국이 발생주의, 복식부기체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하거나 도입자체를 연기하고 있음은 이상 상황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는 단순한 계산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행동양식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⁸⁾

정리하자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시스템과 전산장비의 도입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과는 거리가 먼, 자원의 기본 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이다. 이를 일관성 있게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의 논란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음이 보이는 상황에서 강행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2. 실행가능성의 향상을 위한 조치의 제언

다음으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의 비교적 안전한 도입을 위한 실행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될 것이다.

-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개발과 연관부서와의 일관성 강조
-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및 보고양식의 개발
- 회계업무 담당공무원과 예산 및 집행담당 공무원의 재교육

8) 구체적인 예를 들어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되는 경우 그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과 비용을 통한 재정효율성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필연적으로 효율성 측정의 요소가 되는 것은 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조달비용 또는 유지비용을 포괄한다.)이 될텐데 이는 자산의 범위와 가격, 조달비용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 외에 사용된 자산(집행된 예산)이 가치적이고도 화폐가치로 측정가능한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과 국가자원의 낭비로 빈축받을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재정상태와 성과의 실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의 정비, 개발

먼저 정부부문의 회계기준에 대한 확실한 개념과 범위의 정립이 필수적인 선행조치라고 말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국가재정의 파악과 효율성의 측정에 있어서 기준이 될 회계원칙은 민간부문의 그것과는 상당부분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며 원칙이 구체적인 실무에 미칠 절대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신중성 있는 입안과정이 필요하다.

현 상태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논의 주제가 되고있는 사회간접시설을 포함한 국유재산의 평가와 감가상각, 장기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국방자산과 문화재 등 보존자산 그리고 삼림자원과 국립공원 등 수탁자산의 특수취급,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연금부채를 비롯한 사회보장충당금의 인식, 국가보증채무의 우발채무 계상 등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한 발생주의기준과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어가고 있음을 주시할 때 우리나라의 정부회계기준은 당분간 발생주의를 표방한 수정현금주의회계 또는 수정발생주의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며 실행가능성과 도입의 용이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방향전환으로 인정해야할 진행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부처의 주도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과 본질이 유사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대해 부처간 인식과 측정의 기준이 다른 경우 결과로서 보고되는 재정성과가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부처별 성과평가의 지표 개발은 정부회계의 공공적인 특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다. 비영리목적의 예산집행이 대부분인 정부활동에서 비영리라는 어휘는 그 자체가 수익성 또는 화폐로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성과와는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발생주의회계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도 각 부처별로 수많은 성과보고의 양식과 지표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진정한 해당부처의 성과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단지 재무제표의 보조자료로 제시되고 있음은 전술한 상황이 내포한 의미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문에 있어서도 부처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은 파장이 큰 논의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담당여부를 떠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도 시급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운영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입으로 인한 의사결정기준과 행동양식의 변화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재무제표와 그 구성요소(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과 각 담당자의 해당업무와 연관된 회계사상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화에 대한 개념과 성과의 측정에 대한 개념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대한 교육은 새로 설계되고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이 기존의 재정정보시스템과 흡사하다는 면에서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부회계기준과 일관된 회계처리원칙이 시급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상태와 성과의 실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시스템의 정비, 발전 또한 가시적인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작용함이 상례이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자산을 위시한 재무제표구성요소의 종류별 내용과, 기간별 발생주의적 회계처리를 위한 연산의 알고리즘, 실시간 정보처리기술의 접목 등이 시스템 자원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항목들이며 이들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시간의 성과측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인재 (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개혁.
- 강인재 (2001).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8권 제1호.
- 김광윤 (2002). 정부도 분식회계?, 조세일보, 9. 16.
- 부천시 (2001). 회계기준논점.
- 이덕훈 (2002). 정부재정회계제도 변경이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과 실무적 대처방안, 산업자원부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 이상운·장권 공저 (2002).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 법문사.

산업자원부 (2002). 2003년도 예산세부내용.

재정경제부 업무자료 (2002).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왜 도입하여야 하나? 그 준비는?.

재정경제부 업무자료 (2002). 국고금관리제도 어떻게 바뀌나?.

총무처 직무기획단 편저 (1997). 신정부개혁론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편호범 (1998). 정부회계론, 법경출판사.

(2) 해외문헌

IFA-PS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Public Sector Committee) 연구보고서,

Study 1: Financial Reporting by National Governments.

CIGA(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회계기준서, 1993.

미국 FASAB(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s) 재무회계 개념기준서.

IMF, *Code of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재정투명성 규약).

日本 公認會計士會 概念報告書, 1996.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

筆谷 勇, *政府會計革命*, Caleb & Company, 1999.

(3) 인터넷자료

<http://www.mocie.go.kr/> (산업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홈페이지)

A Study on Governmental Accounting Change and Accrual Basis

Deokhoon Lee*

ABSTRACT

Nowadays, the governmental accounting of South Korea is facing a radical change that mainly includes Accrual Basis Accounting. In this study, I will discuss key factors of these governmental accounting changes and provide some political suggestions to help the implantation of this new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examples of some other countries. These suggestions include consistency within executive departments, multiple performance indices, training of staff, and electric data processing systems.

Key Words: Governmental Accoun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Professor of department of secretarial administration, Bucheon college